

제 호

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

기관명칭 :

소재지 :

대표자성명 :

주소 :

생년월일 :

위 기관을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」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
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과학기술부장관 [인]